

June 20, 2014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

– 최근 유럽 최고법원의 판결과 그 파급 –

2014년 5월 13일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JC, European Court of Justice)가 내린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1.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사안

스페인의 변호사인 곤잘레스(Costeja Gonzalez)는 2010년 스페인의 AEPD(Data Protection Agency, 정보보호국)에 (1) 스페인 신문인 라 방구아르디아(La Vanguardia)의 1998년도 기사가 링크되어 있는 검색 결과를 보여준 구글(Google Inc.)과 구글 스페인(Google Spain, 이하 '구글')에 대하여는 위 기사를 검색결과에서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2) 라 방구아르디아에 대하여는 위 기사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구글에서 곤잘레스의 이름을 검색하면 곤잘레스 소유 부동산의 공매에 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이 기재된 위 1998년 신문기사가 검색되었는데, 위 기사에는 곤잘레스의 부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EPD는 구글에 대하여 관련 링크를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신문사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요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구글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스페인 고등법원에 제소하였고, 스페인 고등법원은 EU의 1995년 데이터보호준칙(Directive 95/46/EC)이 인터넷 검색엔진에 적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에 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응답이 금번 판결입니다.

2.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요지

판결의 요지는, (1) 회사의 데이터 처리 서버가 유럽 밖에 있어도 검색엔진 운영자가 EU 내에 지점이나 지사를 두고 있다면 EU 준칙은 당해 회사에 적용되고, (2) 검색엔진 운영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자(controller)이므로 EU 준칙의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으며{검색엔진이 정보를 인덱싱하고 일시 저장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처리(processing)'이고, 검색엔진 운영자는 '처리자(controller)'에 해당함}, (3) 개인은 웹 페이지 자체의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하여 나온 검색결과에 관하여 직접 검색엔진에게 그 링크를 삭제할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유럽사법재판소는, 잊혀질 권리가 무한정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당해 개인정보가 데이터 처리 목적에 비하여 부정확(inaccurate), 부적절(inadequate), 관련이 없거나(irrelevant) 혹은 과도(excessive)한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 표현의 자유나 다른 기본권, 공인으로서의 역할 등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잊혀질 권리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이 판결은 기존의 개인정보의 법리에 따라 검색엔진 운영자에 대한 링크 삭제권으로서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3. 우리나라의 잊혀질 권리

국내에서는 아직 잊혀질 권리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은 없습니다만, 현행 우리나라 법령 상으로도 ‘잊혀질 권리’로 포섭될 수 있는 조문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7조에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처리정지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6조 제1항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도 검색엔진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위 규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위 제36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위 다른 법령의 예로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국세기본법 등이 있으나, 그 외의 예외 사유(예를 들어,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표현의 자유, 역사적·통계적·과학적 조사 목적인 경우 등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삭제범위가 확대될 소지가 있고, 이는 결국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 4항에서 이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중 하나로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타인이 제공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를 침해 받은 경우를 규제하므로, 잊혀질 권리의 적용범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규정 역시 다양한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한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일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기고 있어, 개인정보 주체와 정보 제공자 사이의 분쟁 외에도 개인정보 주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 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분쟁을 염려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요구를 정밀한 검토 없이 수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영구삭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임시조치를 남발할 경우에는 당해 정보 제공자와의 분쟁을 차치하고서라도, 역사의 왜곡, 알 권리 침해 등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마저 존재합니다.

고도의 정보화 시대에 잊혀질 권리가 갖는 함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의 위 판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기본권 등 그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과의 균형을 맞추는 필요성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잊혀질 권리에 대한 입법 등 그 제도적 정비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그 도입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에 앞서 위 규정들을 포함한 현행 법령에 대한 해석과 함께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하여 먼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로서도 잊혀질 권리 등 정보주체의 인식변화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동향을 잘 살핍으로써 기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단지 사후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정보 거버넌스로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윤종수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40 | E-Mail. jsyoon@shinkim.com |
| ● 김윤희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25 | E-Mail. yhekim@shinkim.com |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